

January 17, 2025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I.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024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2025.1.17. 입법예고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17~2.5.),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주제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 신설
 - * (반도체)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기술, 마이크로 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 (수소)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추가

	세부기술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 전력관리반도체(PMIC)추가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 제조 기술 → UWB(ultra wide band)추가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 → HDR(high dynamic range)추가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소재 기술 → Buffer 소재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3개 신설

* (수소)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에너지효율·수송)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 확대

	세부기술
첨단 소부장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 제조기술 범위 구체화(확대)
	첨단 터닝센터 설계, 제조기술 범위 구체화(확대)
탄소중립	석유계 고분자 대체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확대)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령)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상 우수 해외인재(글로벌 Top100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등 감면기간 확대(조특령)

-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

- 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조특령)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조특령)

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계 추가(상증령)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및 개인 비사업용토지 제외(상증령)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 기준선박 외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0~25,000톤	7원	9.1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 규정 신설함에 따라 이연된 양도세 납부방식,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조특령)
- (계산방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양도 또는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세 산출
- (납부시기)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
- (신청방법)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과세이연신청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

3) 자본시장 활성화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10년물→5년물 이상) (조특령)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2.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 (비과세 제외)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등

- (지급횟수 기준)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

2)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 허용(소득령)
-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5년 상반기 한시 인하(5%→3.5%, 100만원 한도)

3.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 (시가 판단기준)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재판매 금지)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
-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령)
 -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2) 과세형평 제고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조정(조특령)
 -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에서 제외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 3억원으로 규정(소득령, 법인령)
-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국조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 10%~20% 누진율, 20억원 한도→10% 단일율, 10억원 한도
 - (금융정보 제공) 금융기관별 2천만원/1천만원→계좌별 30만원/10만원, 한도는 동일

관련 구성원

심규찬

변호사

T 02.3404.0679

E gyuchan.shim@bkl.co.kr

주성준

변호사

T 02.3404.6517

E seongjun.joo@bkl.co.kr

김동현

공인회계사

T 02.3404.0572

E donghyun.kim@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